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역사충절 관광자원화 사업 완료에 따라 도은 이숭인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설치한 역사충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
○ 역사충절공원의 관리 및 운영(안 제4조～제12조)

- 휴관일, 시설 이용시간,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, 예약사항
- 사용료 감면, 징수방법 등
- 입장료 무료, 한옥체험시설 시설사용료 납부

○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13조～제16조)

-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
-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
- 위원의 위촉해제 사항

○ 위탁운영(안 제17조～제22조)

- 위탁운영 예산 지원
-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 가능
- 위탁의 취소 사항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○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8. 9.13. ~ 10. 3.)

○ 규제심사 : 해당 없음〔기획감사실-7063(2018. 9.11.)〕
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51564(2018. 9.13.)〕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18년 6월, 성주역사충절공원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

○ 관리·관리운영 주체, 관람 및 이용시간, 휴관일,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, 이용자 준수사항,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, 관리·운영의 위탁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